

특집 I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과 기업에서의 대응방안 (I)

서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 병 룩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가.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 제품, 식품·의약품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인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기업에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 마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기업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또는 기업이 모두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는 일은 결코 없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결코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는 입법례는 없다. 다만 개별사건에 따라 판사가 제조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경우(이를 '사실상 추정'의 법칙이라고 함)는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가져올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와 기업의 결합제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와 같이 '과실의 입증'이라는 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간의 소모적인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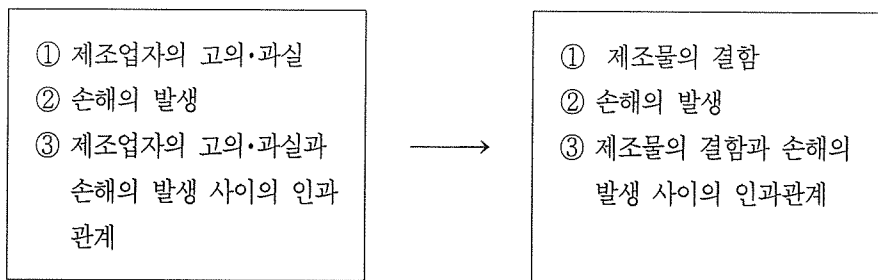
따라서 기업은 이제 우리 나라에 조만간 입법될 것이므로 이 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제조물관련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하(우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주요의무의 태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

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함제조물의 피해자(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손해 ③손해와 고의 또는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 ③손해와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주관적인 「고의·과실」의 요건이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요건 비교 〉



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기업에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

그러면 왜 엄격책임을 제조업자등(판매업자 포함)에게 부과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 ㉓ 제조업자등은 고도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의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위에 있다.
- ㉔ 제조업자등은 그 제품의 제조·판매에 의해 이윤을 얻고 있다.

- ㉔ 제조업자들은 결합제품으로부터 생긴 손실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널리 소비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 ㉕ 손실을 제조업자들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스스로 보다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에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 기대될 수 있다.

다. 리콜(Recall)제도와와의 비교

(1) 리콜제도의 의의

제품의 결함시정제도 또는 리콜제도와 함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또는 유통시킨 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당해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교환·환불·파기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결함있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개별제품의 품질의 하자로 인하여 사업자가 피해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안전성이 결여된 결합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구제제도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눌 수 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에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

함시정제도와 정부의 강제적인 결함시정제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인 리콜은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해를 계속·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거·파기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리콜은 95%가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5%정도가 강제리콜을 당하게 될 정도로 자발적인 리콜이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위해물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수거·파기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리콜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강제리콜을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유지 및 확보를 위하여 A/S차원에서 시작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통중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안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로서는 해당사업자에게 적절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거·파기 등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소비자 안전관련 법령에는 위해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수거·파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한 경우에도 리콜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안전기준 보완 및 제정, 강제리콜 실시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 운영절차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절차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함제품 관련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결함의 위해성을 확인한 다음 당해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교환·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위해정보수집

재정경제원 장관은 경찰서, 소방서, 소비자단체, 종합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상 알게된 위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위해정보 종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종합적인 위해정보의 수집없이 리콜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참고로 외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결함제품의 위해성 평가

- ① 당해제품이 리콜을 할 정도로 위대한지의 여부는 당해제품의 결함과 관련한 동일·유사사고의 빈도, 위해의 심각성 및 시급성, 정밀시험·검사결과, 소비자의 오용·남용가능성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 ② 결함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리콜결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소비자보호원 산하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국가별 위해정보 수집시스템 운영현황

구분 국가	정보수집 시스템	운영주체	정보 수집 대상 기관	수집방법	예산지원
미 국	NEISS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91개 병원	전산망 (온라인)	병원별 별도계약
EU	EHLASS	EU	12개국 58개병원	전산망 우편	-
영 국	HASS LASS	상무부	33개 병원	전산망 (온라인)	정보수집원 고용
프랑스	-	경제재무부 (DGCCRF)	소방서, 경찰서, 약국	전산망 우 편	-
일 본	PIO-NET	국민생활센터 (JCIC)	8개병원, 292개 지방 소비생활센터	전산망 (온라인), 우 편	연간 300건 이상 제공시 180만엔 지급
한 국	위해정보 수집망	한국 소비자보호원	경찰서, 소방서, 병원, 학교, 소비자단체등	우 편	정보 1건당 1만원

○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결함제품에 대하여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된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기로 결정하면 사업자는 결함내용, 결함관련 주의사항, 시정방법 등을 우편, 언론매체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계획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함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 연월일을 포함한다)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 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2〉 품목별 리콜(Recall)제도 현황

품목 구분	위해관련 모든 물품 및 용역	식품	자동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관부품
주무부처	물품 및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 경 부
근 거 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요 건	- 안전기준 위반 - 소비자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가능성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또는 발생가능성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위반
절 차	소비자에게 위해사실 고지 →시정계획에 따라 시정→ 주무부장관에 시정결과 통보	소비자에게 위해사실 고지→당해품목 회수후 파기	소비자에게 시정계획 고지 또는 일간지에 공고→시정계획 및 시정결과 정부에 통보	자진시정 또는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시정계획서 제출 및 승인→시정결과 정부에 통보
시정명령	시정결과 미흡하면 수거·파기 등 시정명령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시정명령	시정계획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벌 칙	안전기준 위반 또는 시정명령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에 대한 위해사실 고지 및 당해품목의 회수·파기의 무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위반 →100만원 이하 벌금	시정계획미제출 또는 시정명령 위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시기	'96년 4월	'96년 9월 30일	'92년 9월	'91년 2월

○ 정부의 강제적 리콜

주무부 장관은 사업자의 시정결과가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할 경우에도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수거·파기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작상의 결함제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결함의 확인, 시정조치 등 리콜에 대한 운영절차가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고, 식품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9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품목별로 리콜제도의 근거법, 운영절차 및 요건은 <표 2>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의 리콜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다음의 두 경우에 시행된 실적이 있다.

(3) 우리나라 리콜제도 운영현황

○ 자동차관리법상 자발적 리콜 : 현대 포터·그레이스 자동차의 진공펌프 결함으로 75,557대 리콜('95. 8. 29)
○ 대기환경보전법상 강제적 리콜 : 현대 엘란트라 DOHC기종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장치 결함으로 89,000대 리콜('96. 1. 11)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 일반공산품에 대하여는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소관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놓고 기준 위반물품에 대한 판매·진열·운반금지 및 수거·파기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품의 위해성 평가와 사후관리·감독체제의 미흡으로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번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차·식품 외에 일반공산품에 대한 리콜 운영절차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다.

전기제품, 식품(식품공전),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기준), 의약품(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압력솥, 헬멧, 롤러스케이트, 탄산음료병, 유아용침대 등 안전기준이 미비된 소비용품이 산재되어 있다.

둘째, 리콜전담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가전제품, 유아용품, 놀이시설 등 일반공산품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을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같은 전문적인 리콜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4) 리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향후 보완사항

첫째, 제품에 대한 객관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자동차(자동차안

셋째,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및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 제조

물책임(PL)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용이하게 배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실체법상의 사후구제제도이며,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으나 개개인의 피해가 소액이어서 피해자 개인에 의한 제소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유용한 제도로서 피해소비자중 1인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효과는 전체 피해자에게 똑같이 미치도록 하는 소송절차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양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비자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송비용, 패소했을 때의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감안하여 미리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되는 등 활성화 될 것이다.

2.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①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전체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 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 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규제완화, 자기책임이 중시·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개발·제조·판매의 기준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제조물 책임법이 그러한 제조물의 안전대책상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조업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제조물의 안전대책이 실시되는 것은 제조물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확보기준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② 소비자보호의 충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사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해지게 되며,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재판외에서 분쟁해결이 촉진된다. 제조물책임은 실체법상의 관점에서 보아 손해전보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지만 분쟁해결이라는 사회제도·절차법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물사고에 기인하는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인정된 제조물책임은 그 법적인 성질이 민사실체법이지만 ①제조물의 객관적인 성질인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

으로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점 ② 주관적인 요건인 「제조업자의 과실」의 판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곤란을 해소하고 제조물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점 ③ 「제조물의 결함」의 판단기준은 결국 사회적 상식, 사회통념에 의하게 되므로 재판외에 있어서 법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제조물책임에 수반되는 이러한 특징은 제조물사고에 관한 분쟁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살려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운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소비자단체·언론의 홍보로 지금까지 입증의 곤란으로 구제받지 못한 클레임·소송건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게 되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친 소송남발(濫訴)에 의한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보험료의 고액상승·그에 따른 기업도산 등의 이른바 PL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소송제도와 사회환경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식의 PL위기가 초래될 우려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③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의해 기업은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만일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구제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제조물책임의 방어(PLD)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품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안전(PS)과 이것을 통한 고객만족(CS)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몰두해야 할 과제이다. 긍정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제품경쟁에 우위를 가지는 효과도 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에 의해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제조물의 구입자(소비자)의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조업자에 있어서도 「안전한 제조물」이 중요한 세일즈포인트로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같은 제조물중에서 제조물을 구입할 때 선택할 요소로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의 호화성」, 「제조물의 다양성」, 「제조물의 사용편리성」 보다는 「제조물의 안전성」에 제조업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안전한 제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컨대 「PL」이라는 마크나 「제조물책임대응상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에 합치된 제조물을 제조·판매하지 않으면 제조물이 경쟁에서 타격을 입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쉽게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개발·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부정적인 영향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그에 관한 매스컴 등의 빈번한 보도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사고 클레임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에 상담과 불만제기 건이 두 배로 증가한 경우가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계기로 제품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편승하여 기업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걸어 마스크 등에 폭로를 악용하여 무리한 보상을 강요할 우려도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가 PL법을 제정하면서 야쿠자와 같은 범죄집단이 PL법을 악용하여 제품의 사소한 결함을 트집 잡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당사자인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되며, 특히 제조원가의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개발지연 및 기업이미지의 실추 등을 들 수 있다.

① 제조원가의 부담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여지고 이에 따라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과 PL보험료가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수익을 압박할 수 있다. 특히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PL보험은 PL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고액의 리콜비용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배상금은 보험으로 카바되지 않기 때문에 PL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② 인력자원의 낭비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기업의 중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장기화되면 최고경영자는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영전략수립과 집행에 충

분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낭비되게 된다. 나아가 설계·품질관리·경고파트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몇 년간 PL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1989년 미국의 GM사는 픽업트럭의 충돌로 인한 폭발사고로 10대 소년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에서 4년간이라는 장기전을 치루어야 했다. GM사는 93년에 1억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 주어야 했지만 그 보다는 4년동안 투입한 트럭 두 대분의 자료제출과 250명의 인원동원으로 인한 인력자원과 비용이 훨씬 컸다고 토로한 바 있다.

③ 신제품개발의 지연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결함을 요건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비록 개발위험의 항변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제조당시의 최고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④ 기업이미지의 실추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이미지의 실추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마쓰시타(松下)전기가 제조한 TV의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조자가 소송에서 패소(배상금 : 440만엔)하자

동일한 TV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등 대중 매체에 노출되어 기업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 문의 안내 >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사내 특강이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성 명 : 최 병 록 교수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번지 서원대학교 법학과

전 화 : (043) 261-8605(연구실) / FAX : (043) 261-8248

휴대폰 : 011-468-8605/E-mail : brchoi@dragon.seowon.ac.kr

홈페이지 : <http://www.dragon.seowon.ac.kr>

